
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총무지원처장
(경유)

제목 공기구비품(디지털카메라 등 2종) 불용 요청

1. 관련근거

가. 물품관리규정 제50조(불용결정기준) 및 제51조(불용결정의 절차)

나. 총무지원처-1692(2017.03.16.) 『통합에 따른 본사 전 부서 기록물 및 통합창고 정리』

2. 위 호와 관련하여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및 고장으로 용도상실된 공기구 비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불용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불용대상 : 디지털카메라 1대, 라벨프린터 1대

나. 물품 세부 규격 및 불용 사유 : 붙임 참조

- 붙임 1. 불용물품심사조서(디지털카메라 등 2종) 1부.
 2. 사진대장(디지털카메라 등 2종) 1부. 끝.

전자처장 

대리 공태식

처장 03/17
송재찬

협조자

시행 전자처-972 (2017.03.17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
전화 02-6311-2457 전송 02-6311-4379 / 2070136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